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사원에서 전국 주요 석유화학단지 관련 고압가스, 화학물질 및 위험물 이송형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리실태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이송 배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이송 배관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에 포함시켜 배관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22.2.27.)함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배관설치자가 배관 정보를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지자체 등이 산업용 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굴착허가, 재난 대응 등의 업무에 활용 및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관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14호 등 신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 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 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u>고압가스배관</u>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u>제1항제6호의 제조소 등</u>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u>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u> <u>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 201 - 3584